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1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 이종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기덕, 김길영,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남궁역, 문성호, 민병주,
박환희,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아이수루, 유정희,
, 윤영희, 이봉준, 이상욱,
이종환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맞춰 조례 제명, 목적 및 관광 지원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기존의 관광취약계층에서 장애, 노령, 임신 등이 포함된 관광약자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복지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 및 목적, 책무, 관광지원기본계획, 민간참여의 촉진, 예산편성, 표창 대상을 관광취약계층에서 관광약자로 변경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중 “관광취약계층”를 각각 “관광약자”로 하고

제4조제1항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관광취약계층을”을 각각 “관광약자를”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 중 “관광취약계층을”을 “관광약자를”로 한다.

제8조 중 “관광취약계층”을 “관광약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
원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
항
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
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
획에 관한 사항
3.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
원에 따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
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상
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
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생 략)

제6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

--
2. 관광약자를 -----

3. 관광약자를 -----

--
4. 관광약자를 -----

5. 관광약자를 -----

6. ----- 관광약자를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민간참여의 촉진) -----
관광약자를 -----

-----.

제7조(예산편성) 시장은 관광취약
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관광취약계층
의 관광 활동지원에 공적이 있
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
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
다.

제7조(예산편성) ----- 관광약자
를 -----

제8조(표창) ----- 관광약자-----

